

혁신성장전략회의  
20-21



---

융복합·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 
경쟁 촉진을 통한  
외환서비스 혁신방안

---

2020. 6. 4.

기 획 재 정 부

# 순서

I. 그 간의 외환제도 개선 성과 .....	1
(참고1)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·비대면 외환서비스 .....	2
II. 미흡한 측면 .....	3
III.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 .....	4
1. 융복합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.....	5
(참고2) 위탁·중개 허용에 따른 보완방안 .....	8
2. 新사업 규제 신속확인·면제 제도 도입 .....	10
3.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촉진 .....	11
4.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 .....	15
IV. 기대 효과 .....	19
V. 향후 추진 일정 .....	19
(참고3) 혁신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.....	20

## I. 그 간의 외환제도 개선 성과

- ◇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외화 조달·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환전, 송금, 외화증권 매매, 해외결제 등 외환서비스를 제공
- ◇ 외국환거래법령은 외환유출입 모니터링,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거래절차를 정하고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춘 기관에만 서비스 제공을 허용

### ① 외환거래가 상당부분 자유화되고, 감독체계도 선진화

- 외국환거래법 제정('98) 이래, 외환자유화 정책은 일반 국민과 기업의 거래제한 폐지\*와 거래절차 완화\*\*에 중점

\* 경상거래는 자유, 자본거래는 과거 허가제와 거래한도가 폐지되며 사전신고로 가능

\*\* (예) 지급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금액 上限(천불): 1 → ('15) 2 → ('17) 3 → ('19) 5

- 또한, 사전예방, 고위험 분야 중심의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

### ② 핀테크 기업의 진입과 혁신적 외환서비스가 확대

- 최근 금융산업 발전, 핀테크 금융의 확산에 따라 외환서비스 혁신의 관점에서 환전·송금 서비스 공급자의 확대도 추진

- 외환업 등록단위 세분화\*(스몰라이센스),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환전·송금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진입 허용\*\*

\* 핀테크 기업('17)과 증권·카드사('18)의 소액송금, 온라인·무인 환전('18), 선불 전자지급수단 해외결제('19) 등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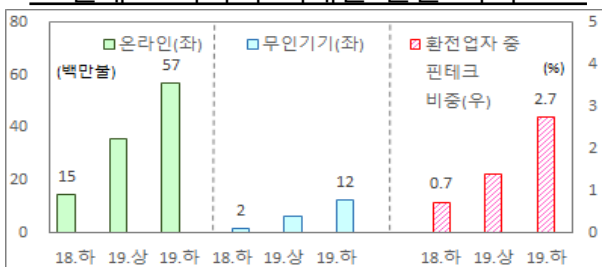
\*\* 외환서비스 공급자로서 핀테크 기업 증가: ('15년말) 16개 → ('19년말) 72개

- 규제입증책임 전환제\*, ICT 및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외환서비스 공급자의 새로운 시도를 촉진·수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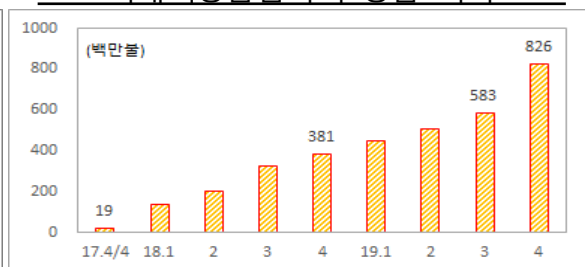
\* 소액송금 한도 상향, 저축은행 송금업 허용 등 총 32건 규제 폐지·개선('19.3월)

⇒ 외환거래의 기초가 되는 환전·송금 서비스에서 혁신이 확대

< 핀테크 회사의 비대면 환전 서비스 >



<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서비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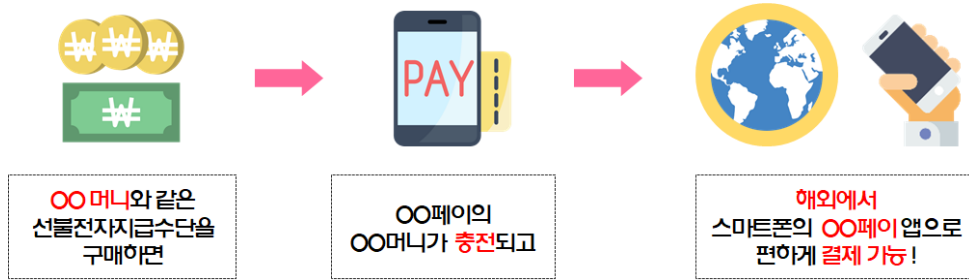


### 1. 'OO페이의 OO머니'를 통한 해외결제

\* '19.5월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 허용

□ 해외결제 수단이 현금·신용카드 → 'OO페이의 OO머니'까지 확대되며 현금 소지부담 및 분실위험 감소,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축소

⇒ 네이버페이, 토스 등 5개 업체가 일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 ('19.6~12월 간 약45억원 결제)



### 2. 드라이브 스루 환전

\* '19.4월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의 환전사무 일부 위탁에 대한 특례 부여

□ 온라인으로 은행에 환전 신청 후 원화를 입금하면 면세점 주차장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

⇒ 우리은행은 면세점 주변 주차장 관리업체와 제휴를 통해 소비자가 환전 신청한 외화를 주차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개시('20.5월)



### 3. 온라인(O2O: Online to Offline) 환전 및 무인기기를 통한 환전

\* '18.5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온라인 및 무인기기 환전업 신설

□ 온라인 신청·입금 후 원하는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거나, 무인기기를 통해 24시간 환전할 수 있어 환전의 시간·장소적 제약 완화

⇒ 온라인 및 무인기기 환전실적 : ('18.3/4)77 → ('19.4/4) 317억원

## II. 미흡한 측면

### ① ‘협업’과 ‘경쟁’ 저해 규제가 잔존 → 혁신의 질적 성장 제약

- 환전·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위해 불가피한 점 있으나, **혁신적 시도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**
  - 은행, 환전영업자, 소액송금업자\*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탁을 불허 → **협업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\*\* 출현 제약**
    - \* 건당 5천불 이하 송금서비스 취급가능한 증권·카드사, 저축은행, 소액해외송금업자
    - \*\* (예) 증권사(송금신청)와 핀테크 기업(무인기기로 대금입금)의 소액송금 서비스 협업
  - 핀테크 회사 진입은 허용하면서도, 업무방법·범위를 은행 대비 과도하게 제한\*하여 **경쟁력 제고·비대면 영업 활성화 제약**
    - \* (예)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의 송금대금 수납 또는 고객에게 송금되온 대금 전달시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 → ATM 등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 활용 불가
- 기존 법령 해석·개정 절차로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 판단 및 면제 등 **규제 불확실성의 신속한 해소가 미흡**
- 금융회사간 업무 칸막이가 상존하고, 핀테크 기업은 업무범위가 은행과 다름에도 일부 진입요건·절차가 은행과 동일 → **경쟁 제한**

### ② 거래절차 간소화와 이를 보완하는 감독역량 강화도 지속 필요

- 디지털화·경제규모 확대 등 규제환경 변화는 기존 **대면·사전 신고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후 감독역량 보완을 지속 요구**

◇ ①샌드박스 접수 과제, 은행·금투업자·핀테크 등 ②이해관계자 건의, ③감독기관 의견 수렴 등\*을 거쳐 혁신과제 발굴

\* 이해관계자, 감독기관(한은, 금감원, 관세청) 간담회 총 18회 개최 + 서면건의 접수

➔ 외환산업 혁신과 거래절차 간소화를 위한 **29개 과제 마련**

### III.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

#### 기 본 방 향

- ① **융복합·비대면 서비스 활성화**를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·확대
- ② **新서비스 규제 불확실성**은 정부가 신속히 해소, **혁신적 실험 뒷받침**
- ③ **업무 칸막이·진입장벽 완화**로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
- ④ **일반국민·기업의 거래절차 간소화** + **사후 감독역량 강화**도 지속

#### 혁신과제 및 기대효과

##### 1. 융복합·비대면 활성화

###### 산업내, 산업간 융복합 기반 마련

- 환전사무의 위·수탁 허용
- 해외송금 사무의 위·수탁 확대
-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

###### 비대면 영업 제약 규제 폐지

- 소액해외송금업자-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 (계좌 거래 → ATM, 무인기기 등 거래로 확대)
- 온라인 환전업자-고객 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 (계좌 거래 → 오프라인 등을 통한 거래도 허용)

##### 3. 외환서비스 경쟁 촉진

###### 증권사, 카드사 업무제한 완화

-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,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등 환전 업무 확대
- 증권·카드사의 소액송금업체 정산자금 송금 허용

###### 핀테크 기업 진입장벽 완화

- 외환업 등록 요건 예비검토 절차 마련
- 핀테크 기업 외환업무 등록요건(전문인력) 완화 및 외환전문인력 교육과정 추가 개설

##### 2. 新사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

- 新 사업 규제 신속 확인·면제 제도 도입 (필요시 업계전반에 규제를 면제)

##### 4. 거래편의 + 감독 효율성 제고

-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
- 외환거래 자료 수집 및 감독기관 공유 확대 +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경미한 제재 신설



- ❖ (외환산업 전반) 새로운 시장 창출, 新서비스 출시 촉진
- ❖ (서비스 공급자) 혁신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, 관광·온라인상거래 등 연관산업 지원
- ❖ (서비스 수요자) 외환서비스의 비용 절감,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

→ 대표적 혁신사례(flagship-project)가 조속히 창출되도록, '20.3분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완료

## ① 환전사무의 위·수탁 허용

- (현황) 은행·환전영업자만 환전업 수행이 가능하여 고객은 환전 신청, 대금 수령 모두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를 거쳐야만 가능
- (개선방안) 고객이 은행·환전영업자 외의 금융회사, 항공사·면세점·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게 허용
- (조치사항)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환전사무 위·수탁\* 허용
  - \* 자금세탁방지법령, 금융실명법령상 의무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

## &lt; 세부 개정사항 &gt;

- 신청 접수부터 대금수납, 대금전달까지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 사무의 위·수탁 허용
  - 은행, 환전업자는 증권·카드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(산업내)은 물론, 상법상 회사(산업간)와도 위·수탁 계약 가능
- (기대효과) 고객이 시간·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①우리 국민, ②訪韓 외국인 등의 환전 편의 제고
    - ②은행 환전업자는 융·복합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창출하고 ③소상공인 등 수탁기관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

## &lt; 새롭게 가능한 융·복합 환전 서비스 예시 &gt;



## ② 해외송금 사무의 위·수탁 확대

- (현황) 소액송금업자\*는 은행\*\*과 달리, 해당 송금업자 플랫폼\*\*\*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

\* 증권·카드사,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

\*\* 소액송금업자는 송금사무 위탁이 불가능한 반면, 은행은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일정요건을 갖춘 상법상 회사에 신청접수. 한도관리 등 일부 송금사무 위탁이 가능

\*\*\* (예) A업체의 소액송금서비스는 A社 앱으로 신청, A社 계좌로 입금해야 이용 가능

- (개선방안)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회사,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\* 이용(송금신청, 대금입금·수령) 가능하도록 허용

※ 은행의 기존 위·수탁 가능 송금사무의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

- (조치사항) 송금사무 전반의 위·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

\* 자금세탁방지법령, 금융실명법령상 의무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

### < 세부 개정사항 >

- 신청접수부터 송금대금 수납·전달, 해외협력업체와 지급지시 교환까지 고객과 이루어지는 모든 송금사무의 위·수탁 허용
- 은행·소액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, 전자금융보조업자(ATM운영업자)와 위·수탁 계약 가능

- (기대효과) ① 송금고객의 편의 개선\*과 함께 ② 소액송금업자는 핀테크 소외계층, 訪韓 외국인 등으로 영업대상 확대 가능

\* (기존) 소액해외송금업자 계좌로 온라인 입금

(개선) 우체국 등 금융회사에서의 오프라인 거래, ATM을 통한 입·출금도 가능

- ③ ATM 등 비대면 사업자, 서민금융기관 등 플랫폼 제공자의 새로운 수익기회 창출

### < 새롭게 가능한 송금 플랫폼 예시 >





### ③ 소액송금업자\*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

\* 증권·카드사,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

□ (현황) 고객이 송금하려는 국가에 협력 네트워크\*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는 서비스를 거절하거나, 외국 송금업체의 네트워크 활용\*\*

\* 소액송금업자는 외국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자금을 송금(pre-funding)한 후, 고객의 송금 요청시 외국 협력업체에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

\*\* 다수 소액송금업자는 건별 \$2~\$6의 수수료로 외국 업체의 네트워크 이용 중

○ 반면, 소액송금업자에게 국내 송금업자가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제공(송금 중개행위)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곤란

□ (개선방안)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서비스 제공

□ (조치사항) 소액송금중개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

#### < 세부 개정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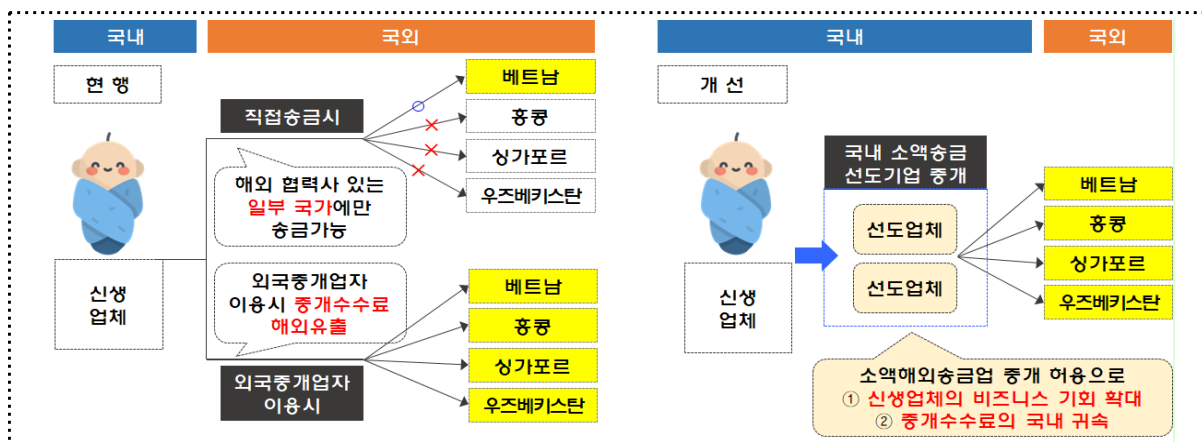
○ 증권·카드사,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소액송금업자간 **송금건별 지급지시, 자금의 사전·사후정산**에 대한 **중개 요청 및 수행**을 허용

□ (기대효과) ①**후발 송금업체**의 시장 **연착륙**(네트워크 구축비용 절감, 송금서비스 국가 확대), ②**비대면 송금서비스 이용고객 편의** 제고\*

\* 고객은 소액송금업자 A가 B국에 송금 네트워크가 없더라도, B국 송금이 가능한 다른 업체를 찾을 필요 없이 소액송금업자 A를 통해 송금 가능

○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외국 송금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③**국내 선도 송금업체의 수익**으로 전환

#### < 소액송금 중개 허용 전·후 비교 >



### 1. 업무의 안정적 수행

- (환전·송금 위탁) 환전증명서 사용(2천불) 및 송금 관련 은행의 확인·증빙(1회 5천불)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 내로 위탁 한도를 제한\*  
+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필요거래(예: 해외이주비 등) 위탁은 배제  
\* 수탁기관의 외환업무 인력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고려
-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송금사무를 수탁 받는 경우 → 수탁계좌를 별도 등록하고 소액송금업무를 위한 기존 등록계좌와 분리운영
- (중개) 중개회사는 중개계좌를 별도 등록 + 기존 등록계좌와 분리운영

### 2. 보고의무 등 거래모니터링

- (환전·송금 위탁) 위탁기관의 거래내역 보고(한은·관세청)와 별개로 수탁기관도 처리내역을 위탁기관을 경유, 금감원·관세청에 보고
- (송금 중개) 중개 요청회사의 거래내역 보고(한은)와 별개로 중개회사도 중개 수행내역을 한은에 보고

### 3. 소비자 보호

- 위·수탁 및 중개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분명한 계약 체결  
→ 금감원 또는 관세청(환전영업자의 환전 위탁시)의 위·수탁 및 중개 계약 적절성 검토 및 사무처리 검사
- 수탁기관 및 중개회사의 이행보증금 적립\* 또는 보증보험 가입  
\* (환전·송금 수탁) 일평균 환전, 송·수금 금액의 2배 (중개) 일평균 중개액의 3배  
※ 기관 간 분쟁발생 시 소비자 보호 지연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, 위탁기관과 중개요청 회사는 물론, 수탁기관과 중개회사에도 이행보증금 적립 의무화

### 4. 과도한 시장지배력 확대 방지

- 중개회사별로 분기별 송·수금 합계 150억원\* 이내로 중개 수행이 가능한 규모를 제한  
\* '19년 금융 샌드박스 과제를 통한 소액송금중개업 특례 부여시 부과조건 ('19년 1분기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평균 송·수금 금액)

## ◇ 핀테크 기업-고객간 거래방법(계좌간 거래) 제한 완화

□ (현황) 소액해외송금업자,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고객과 대금을 수납하거나 전달함에 있어 계좌를 통한 거래\*만 가능

\* 고객명의 계좌 ↔ 핀테크기업 명의 계좌 (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)

○ 외환서비스 내 대표적 비대면 사업자인 소액해외송금업자,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영업방식과 이용고객 확대를 제약\*하는 측면

\* (예)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거래 외 ATM 등 비대면 방법 활용 불가,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계좌간 대금전달이 어려운 訪韓관광객 대상 영업 불가

□ (개선방안) 계좌간 거래 이외의 對고객 거래 방법 확대

① (소액송금) 은행과 같이, 계좌 간 거래 외 ATM·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과 송금대금 수납·전달 허용

② (온라인 환전)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 후 오프라인으로 환전 대금을 수납·전달하는 형태의 업무방법\*을 인정

\* (예) 訪韓관광객이 해외에서 환전을 신청하고, 공항에 도착 후 온라인환전업자를 대면하여 외화를 지급한 후 원화를 수령하는 형태의 영업

□ (조치사항) 통첩\* 시행 및 환전영업자 고시(관세청) 개정

\* (규정 10-15조)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

○ (소액송금) 통첩으로 우선 ATM과 창구거래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, 추후 업계 의견수렴으로 계좌간 거래의 예외를 지속 확대

○ (온라인 환전) 영업 방식을 계좌를 통한 거래로 제한하고 있는 관세청 환전영업자 관리고시 개정

□ (기대효과) ①핀테크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, ②저렴하고 빠른 비대면 송금·환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\*

\* (예)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 인근의 새마을 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거래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 가능

- (현황) 핀테크 기업은 전문성, 비용 등으로 새로운 송금·환전 서비스의 출시가능 여부(외환 규제 해당 여부 등) 판단에 한계
  - 규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서비스 출시의 지연 또는 既출시 서비스 제공 중단도 우려
- (개선방안) ①새로운 송금·환전 서비스의 외국환거래법령상 ②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③업계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\*하는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·면제 제도 도입
  - \* 유권해석은 규제면제가 불가능하고, 규제 샌드박스는 신청기업에 한해서만 규제가 면제되는 측면을 보완
- (조치사항)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·면제 제도의 운영근거를 외국환거래규정에 신설하고, 구체적 운영지침 제정

< 세부 제·개정사항 >

- ① 송금·환전 사무의 위·수탁, 소액송금업의 대금수납 및 전달 방식, 송금 네트워크 공유 등 외국환거래법령 해석 사항\*에 대해 적용
  - \*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, 적용할 규제에 공백이 있어 특정 서비스의 출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규제여부 및 향후 규제 가능성을 회신
  - 다만, ①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②금감원, 관세청, FIU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으로 검토 기간이 추가로 요구되는 과제의 경우 분기별로 국제금융 발전심의회 외환제도 분과회의를 개최해 심의·회신
- ③ 필요시, 통첩\*으로 신속히 규제 면제를 시행하여 업계 전반에 적용
  - \* (외국환거래규정 제10-15조)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 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

- (기대효과) 새로운 외환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①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혁신적 실험 뒷받침
  - 신청 기업뿐만 아니라, ②업계 전반에 규제면제를 제도화하여 혁신적 시도를 빠르게 전파

### ①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서비스 활성화

- (현황)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주로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투자자금을 환전(외화 → 원화)
  -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, 외국인 투자자, 증권사의 인지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
- (개선방안)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하는 '제3자 환전'이 활성화되도록 지원
- (조치사항)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\*
  - \*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에 개설된 증권사 명의 '투자전용외화계정'에 외화를 송금하면 증권사가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증권에 투자하도록 한 現 규정의 해석을 명확화
- (기대효과) ① **국내증권사**는 외국계 은행이 寡占 중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**수익·경쟁력** 제고
  - ② **외국인 투자자**에게는 환전편의\* 및 간소화된 거래절차\*\*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 **투자 유인 확대**
    - \*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서 환전이 가능 → **유리한 가격 선택**
    - \*\* 은행에 **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** 환전 및 국내증권시장 투자 가능

#### <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활성화 >



## ②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(PG\*) 업무 수행시 환전 허용

\* **Payment Gateway(PG)** :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·서비스를 고객이 전자적 수단(신용카드 등)으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

□ (현황) 증권사는 국경간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전자지급결제대행 (PG) 서비스를 제공\* 가능하나, 고객 결제자금은 은행을 통해 환전

\*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전자금융업 추가('18.12월, 금융투자업규정 개정)

○ 이에 따라 PG업자 수수료와 은행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

□ (개선방안) 증권사가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

□ (조치사항)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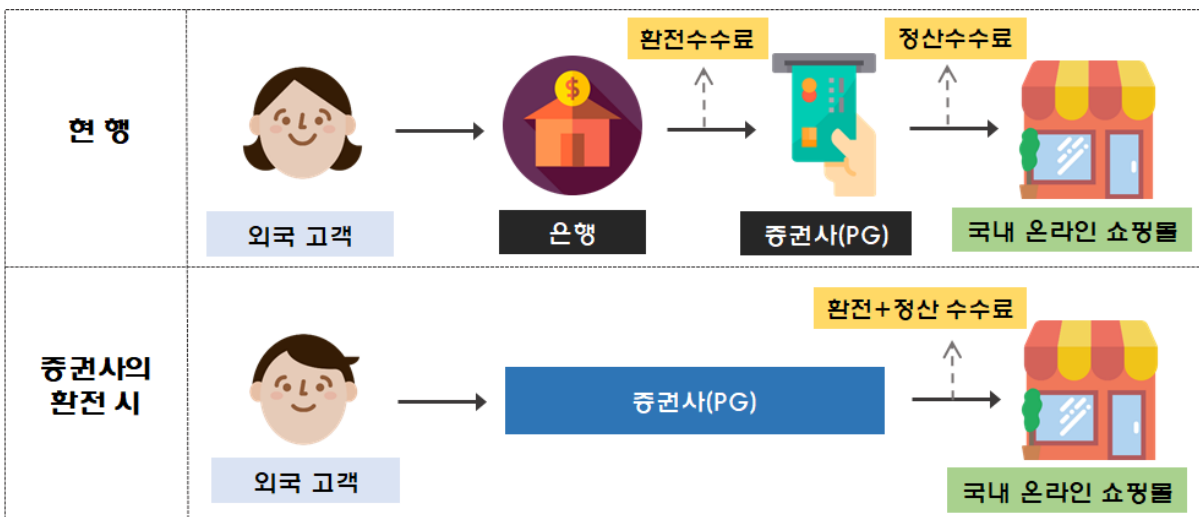
\* 증권사가 겸영업무로서 PG업무를 수행시 직접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'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'(규정 제2-14조)로서 가능함을 명확화

□ (기대효과) 증권사가 PG업무와 환전업무를 모두 수행함에 따라 ① **국내 온라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절감** 기대

○ ② **국내증권사의 PG 시장 참여 확대**를 통해 **수익·경쟁력** 제고

\* 외국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소상공인의 상품·서비스 구매 시 주로 외국계은행을 통해 결제자금이 환전 → 환전수수료가 **국내증권사 수입으로 전환**되는 효과

### < 증권사의 PG업무 수행시 환전허용 (외국고객의 국내 온라인상점 이용시) >



### ③ 증권·카드사의 소액해외송금업체 정산자금 취급 허용

- (현황) 은행과 달리, 증권·카드사는 소액송금만 가능\* → 소액해외 송금업체가 외국 협력업체에 예치하는 거액의 정산자금\*\* 송금 불가
  - \* 1회 5천불, 동일인 기준 1년 누계 5만불
  - \*\* 통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 또는 수금 요청 시, 건별로 거래하지 않고 외국 협력업체에 대규모 자금을 Pre-funding한 후 일정 기간마다 차액을 정산
- 정산용 자금 송금이 송금한도의 제한이 없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은행 의존 심화
- (개선방안) 증권·카드사도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정산용 자금 송금요청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
- (조치사항) 정산용 자금 송금에 있어서는 증권·카드사가 소액 송금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
- (기대효과) ① 소액해외송금업자 경쟁력 제고, ② 증권·카드사의 수익기회 확대

## 나 핀테크 기업의 진입요건 및 절차 개선

### ①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 마련

- (현황) 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외환업 등록 신청 시, 금감원·한은의 자본금·전산설비 등 등록요건 확인을 거쳐 기재부가 등록
  - 최근 핀테크 기업들의 분할·합병이 활발해 지면서 등록요건 확인 절차로 인해 외환업무 중단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제기

#### < 외환업 등록요건 확인절차에 따른 문제점 >

- ※ A社가 自社의 OO페이 결제 업무를 分社하여 영위하고자 할 경우, 신설법인의 ①금융업 인가(금융위)를 거쳐 ②외환업 등록(기재부) 필요
- 금융업 인가(OO페이 국내결제 개시) 이후, 외환업 등록을 위한 금감원·한은의 요건 확인 마무리까지 수일 내 외환업무(OO페이 해외결제) 불가

- (개선방안) 분할·합병 시, 신설(예정) 법인의 외환업 등록요건을 금융업 인가(금융위) 이전에도 미리 검토  
→ 추후 본 등록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



- (조치사항)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·합병 시, 등록요건 예비검토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
- (기대효과) ①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②외환거래 고객의 피해 예방

## ② 핀테크 기업의 외환전문인력 인정 요건 개선

- (현황) 은행과 달리 업무범위와 보고의무가 제한적\*인 핀테크 기업에 외환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은행과 동일 적용
  - \* (은행)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외환업무 취급 + 신고 여부 확인 및 거래내역 보고 (핀테크 기업) 특정업무만 취급가능 +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금액 한도내 영업
  -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한 2명의 외환전문인력 요건\* 필요
    - \* 2년 이상 외국환업무 종사자 또는 기재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 과정 이수자
  - 외환업무 교육과정 이수자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, 현재 금융연수원, 금융투자업협회에만 교육과정이 개설 중
- (개선방안)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및 모니터링 의무 범위 등 업무 여건에 부합하도록 전문인력 인정 요건을 개선
  - 핀테크 회사\*의 외환전문인력으로 본사 파견인력 인정\*\*
    - \* 전자결제대행업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·관리업 등의 경우, IT 기업인 본사가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통해 외환업무를 영위하는 사례 다수
    - \*\* 단, 1명에 한하며, 본사의 외환전문인력으로 既 등록된 인력은 제외
  - 핀테크 업무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금융연수원\*(핀테크 외환과정),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교육과정 추가 개설 추진
    - \* 금융연수원의 기존 외환전문인력 교육과정과 교육내용, 기간·비용을 차별화
- (조치사항) 유권해석(파견인력 인정),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(교육과정 추가 인정)
- (기대효과)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 등록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동시에, 외환업무 전문성을 제고



## 가 거래절차 간소화

## ①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

- (현황) 은행 방문 없이 외환거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, 법적 근거 미비로 확산에 한계
- (개선방안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등 거래절차 이행 확대
  - 고객은 은행에 자본거래 신고서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\*하고  
은행은 각종 지급증빙 서류를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처리
  - \* 우선 해외부동산 취득, 직접투자 등 정형화된 거래에 대한 온라인 신고 추진
- (조치사항) 근거 명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
- (기대효과) ①은행의 비대면 업무 수행을 위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②일반 국민과 기업의 거래 편의 제고

## ②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의 사전신고 → 사후보고로 전환

- (현황) 외환거래에 대한 '사전신고' 원칙으로 인해 이미 신고를 거친 거래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사전 (변경)신고 필요
- (개선방안) 최초 거래시 사전신고를 거친 경우, 거래 내용의 단순 변경사항\*에 대해서는 사전 (변경)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
  - \* (예) 신고인의 상호, 성명, 주소, 소재지 등 및 거래 상대방, 대리인의 변경
- (조치사항) 추가적인 채권·채무의 발생이 없는 기존 거래의 내용 변경은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
- (기대효과) 규제 실익이 낮은 사전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①일반 국민과 기업의 위규 발생 감소 및 ②은행 업무부담 완화

---

### ③ 우리기업의 **교역·해외진출 지원**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

---

- (현황) **교역·해외진출 확대**에도 **기업 활동 지원**을 위한 **외환 거래 간소화**는 **과거 수준**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

\* (예) 수출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 기준인 '전년도 수출입실적 5천만불 이상'은 '08.1월 이후 현재까지 유지

- (개선방안) **절차 완화 수준**을 **기업활동 규모**에 **부합하도록 개선**

- ① 수출기업의 증빙제출 면제 확대 (전년도 수출입실적 5 → 3천만불 이상)
- ② 국내기업 해외지점의 해외건설·용역 등 외화획득 계약을 위한 보증금 지급에 대해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신고 면제  
(현재, 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해서만 신고 면제)
- ③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경상거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신고 면제 범위 확대 (2만달러 → 10만달러)

- (조치사항) **외국환거래규정** 개정

- (기대효과) **교역·해외진출** 등 **우리 기업의 해외영업**과 관련한 **외환거래 편의** 제고

---

### ④ **재외동포**의 송금절차 간소화

---

- (현황) **재외동포**가 **국내 취득재산을 10만불을 초과하여 해외로 반출**하려면 **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확인서**를 발급, **은행에 제출**

\*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의 해외송금은 취득경위 입증서류만으로 가능 →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는 민원 발생

- (개선방안) 재외동포가 국내 '고용에 따른 보수'를 송금할 경우 급여명세서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같음

- (조치사항) **외국환거래규정** 개정

- (기대효과) **재외동포**가 **취득 사유가 명확한 재산**을 **해외송금**하고자 하는 경우 **과도한 서류부담 완화** 등 **절차 개선**

---

## ⑤ 정형적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등 거래절차 완화

---

- (현황) 외국환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특정한 거래의 경우 ‘거래 외국환은행’을 지정하도록 하거나, ‘사전신고’ 의무 부과
- (개선방안)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신고 의무 완화
  - ① 비거주자·외국인거주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수령과 단체해외 여행경비 지급에 대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적용 배제
  -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‘비정형적 지급\*’ 신고 면제  
\* 기간초과 지급, 제3자 지급, 상계,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
  - ③ 선박, 철도차량, 항공기,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 수입 대금의 ‘기간초과 지급’ 신고면제 기준 상향 (2→5백만불)
  - ④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선주상호보험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‘제3자 지급’ 신고 면제
- (조치사항) 외국환거래규정 개정
- (기대효과) 비거주자·외국인의 출국 편의, 해외여행객 지급절차 간소화, 우리 기업과 선박업계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

## 나 감독 효율성 제고

---

### ① 외환거래 자료 수집 및 감독기관 공유 확대

---

- (현황)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범위가 제한적이며, 일부 거래의 경우 거래사유가 불분명하여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(‘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)
- (개선방안) 정보공유 확대 및 은행의 거래사유 확인\* 강화  
\* 은행은 고객의 송금요청시 거래사유를 확인하여 외환전산망에 보고할 의무
- ① 금감원에 상계, 상호계산, 제3자 지급 신고(비정형적 지급) 및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내역을 공유

② 관세청에 환전영업자와 외국환은행간 외환 매매내역 공유

③ 이전거래 송금 사유코드 세분화\*

\* (기존) 이전거래 → (변경) 구호자금, 기부금, 회비납부, 연금지급 등

- (조치사항) 외국환거래규정 개정
- (기대효과) 감독기관의 검사·감독 역량을 강화

---

② 환전영업자의 본사 소재지 세관에 대한 일괄 보고 허용

---

- (현황) 한 영업자가 다수의 환전영업소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, 영업소 소재지별 관할 세관에 등록 및 거래 내역을 보고
- (개선방안)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에 환전영업소 본사와 지점을 일괄 등록하고 보고 가능하도록 개선
- (조치사항) 관세청 유권해석 변경
- (기대효과) 환전영업자 편의 제고 + 감독업무 효율성 개선

---

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재 수단 다양화 (경미한 제재 신설)

---

- (현황)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지나쳐 제재가 어려움에 따라 의무이행에 역효과
- (개선방안)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 경고·주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제재를 세분화

\* (현행) 등록취소, 영업정지, 과징금 → (개선) +시정명령, 기관경고, 기관주의

- (조치사항)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
- (기대효과) 적정 수준의 제재로 외환업무상 의무 이행 담보

## IV. 기대 효과

- ① 외환서비스 전반에서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 되고,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新서비스 출시 가속화
  - 융복합·비대면 확산 등 코로나19 이후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
  - 訪韓 관광객, 온라인 상점 이용 외국인의 외환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, 전자상거래 등 연관산업 지원
- ②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신규 시장참여,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한 수익 증대 가능
  - 대표적 비대면 영업인 소액해외송금, 온라인 환전은 핀테크 소외계층, 외국인 등으로 영업대상 확대
  - 송금·환전 사무 중 일부를 수탁받는 택배업체, 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의 추가적 수익기회도 창출
- ③ 외환서비스 수요자는 거래편의와 만족도 제고
  - 경쟁 확대로 환전, 송금, 온라인 상거래 비용·수수료 인하 기대
  - 송금·환전 서비스 및 자본거래 신고에 있어 시간·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융복합·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편의 제고

## V. 향후 추진 일정

- 유권해석은 즉시 시행하여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
- 외국환거래규정 및 시행령 개정은 2단계에 걸쳐 진행
  - ‘거래 절차 간소화’ 관련 혁신과제는 7월 중 규정 개정
  - 기타 추진과제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후속 조치\* 및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마무리
- \* 위·수탁 및 중개 표준 계약서 마련,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·면제 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마련(기재부 홈페이지 내) 등
- ‘외환제도 개편 설명회’를 은행연, 핀테크 협회 등과 함께 개최하여 관련업계 이해도 제고

**참고3**

**혁신과제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**

**1] 융복합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**

	혁신 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
산업내 산업간 융복합 기반 마련	① 환전사무의 위·수탁 허용	규정 개정	'20.9월
	② 해외송금 사무의 위·수탁 확대	규정 개정	'20.9월
	③ 소액해외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	규정 개정	'20.9월
비대면 영업 제약 규제 폐지	④ 소액해외송금업자 - 고객 간 거래방법 (계좌 간 거래) 제한 완화	통첩 시행	'20.9월
	⑤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오프라인 대금 수납 허용	관세청 고시 개정	'20.9월

**2]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·면제 제도 도입**

	혁신 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
규제신속 확인·면제	新사업 규제 신속확인·면제 제도 도입	규정 개정	'20.9월
		지침 제정	'20.9월

**3]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촉진**

	혁신 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
증권,카드사 업무제한 완화	①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서비스 활성화	유권 해석	즉 시
	②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(PG*) 업무 수행시 환전 허용	유권 해석	즉 시
	③ 증권, 카드사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정산용 송금 취급 허용	규정 개정	'20.9월
핀테크 기업 진입요건 완화	④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 마련	유권해석	즉시
	⑤ 핀테크 회사의 외환전문인력으로 본사 파견인력 인정	시행령 개정	'20.9월
	⑥ 금융연수원, 여신전문협회에 외환전문 인력의 핀테크 특화 교육과정 개설	고시 개정* (외환전문인력 교육 규정)	'20.9월

#### 4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

	혁신 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
거래절차 간소화	①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	규정 개정	'20.7월
	②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(거래내용 단순 변경 등)의 사전신고 → 사후보고 전환	규정 개정	'20.7월
	③ 송·수금 증빙서류 제출 면제대상 수출기업 확대(전년도 수출입 실적 5천만불 → 3천만불 이상)	규정 개정	'20.7월
	④ 해외건설, 용역 등 외화획득 계약을 하는 국내기업 해외지점의 보증관련 신고 면제	규정 개정	'20.7월
	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외국환은행 미경유 경상거래 대가 지급 시, 사전 신고 면제 확대 (2만불 → 10만불 이하)	규정 개정	'20.7월
	⑥ 재외동포의 '고용에 따른 보수' 해외 송금 시, 요구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취득경위 입증서류로 같음	규정 개정	'20.7월
	⑦ 비거주자, 외국인거주자의 출국만기 보험금 수령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 제도 폐지	규정 개정	'20.7월
	⑧ 단체해외여행경비 지급에 대한 지정 거래외국환 은행제도 폐지	규정 개정	'20.7월
	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비정형적 지급* 신고 면제 * 기간초과 지급, 제3자 지급, 상계, 은행 미경유 지급	규정 개정	'20.7월
	⑩ 선박, 철도차량, 항공기,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 수입대금의 기간초과 지급 신고면제 기준 상향 (2 → 5백만불)	규정 개정	'20.7월
	⑪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선주상호보험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제3자에게 지급 시, 신고 면제	규정 개정	'20.7월
감독 효율성 제고	⑫ 금감원에 상계, 상호계산, 제3자 지급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내역 공유	규정 개정	'20.7월
	⑬ 관세청에 환전영업자-외국환은행간 외화매매 내역 공유	규정 개정	'20.9월
	⑭ 이전거래 송금 사유코드 세분화	규정 개정	'20.9월
	⑮ 환전영업자의 본사 소재지 세관에 대한 보고 허용(현재 영업소별 관할 세관 보고)	관세청 유권해석	즉 시
	⑯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재수단 다양화	시행령 개정	'20.9월